

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

(제25조의22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라. 업무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마. 최근 2년간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.
- 바. 품질인증기관이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을 위반한 지역사무소나 지사를 대상으로 처분을 하고, 해당 인증기관에 대해서도 지역사무소나 지사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, 기준을 위반한 사무소 또는 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처분을 받는 사무소 또는 지사의 처분기준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한다.
- 사.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다음 1)부터 3)까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고, 지정 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다(법 제18조의16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)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품질인증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기관 운영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처분기준		
		1회	2회	3회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8조의16 제1항제1호	지정 취소		
나. 업무정지 기간 중에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8조의16 제1항제2호	지정 취소		
다. 법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	법 제18조의16 제1항제3호			

<p>1)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품질인증대상 임업기계장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3) 품질인증기관의 인력, 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 <p>2) 품질인증기관의 인력, 시설 및 장비 중 둘 이상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</p>		<p>경고</p> <p>경고</p> <p>경고</p> <p>업무정지 1개월</p>	<p>업무정지 1개월</p> <p>업무정지 1개월</p> <p>업무정지 1개월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	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업무정지 6개월</p>
<p>라.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</p> <p>1) 별표 4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비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</p> <p>2) 별표 4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·시설 및 장비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</p>	<p>법 제18조의16 제1항제4호</p>	<p>업무정지 1개월</p> <p>업무정지 3개월</p>	<p>업무정지 3개월</p> <p>업무정지 6개월</p>	<p>업무정지 6개월</p> <p>지정 취소</p>
<p>마. 법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</p>	<p>법 제18조의16 제1항제5호</p>	<p>경고</p>	<p>업무정지 1개월</p>	<p>업무정지 3개월</p>
<p>바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18조의16 제1항제6호</p>	<p>업무정지 3개월</p>	<p>지정 취소</p>	